

I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제 1 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2023년 12월 11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2024년 5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설치·운영되었다.

■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시에 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 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 는 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2. 11. ~ 2017. 5. 12.	2017. 4. 12.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3. 20. ~ 2017. 6. 8.	2017. 5. 9.	2017. 3. 10.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2. 12. ~ 2018. 7. 13.	2018. 6. 13.	
2018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4. 13. ~ 2018. 7. 13.	2018. 6. 13.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9. 2. 2. ~ 2019. 5. 3.	2019. 4.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9. 12. 15. ~ 2020. 5. 15.	2020. 4. 15.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0. 2. 15. ~ 2020. 5. 15.	2020. 4. 15.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1. 2. 6. ~ 2021. 5. 7.	2021. 4. 7.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1. 7. 11. ~ 2022. 4. 8.	2022. 3. 9.	
2022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2. 1. 8. ~ 2022. 4. 8.	2022. 3. 9.	
	2022. 5. 9. ~ 2022. 7. 1.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2. 1. 31. ~ 2022. 7. 1.	2022. 6. 1.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3. 2. 4. ~ 2023. 5. 5.	2023. 4. 5.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3. 8. 12. ~ 2023. 11. 10.	2023. 10. 1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3. 12. 11. ~ 2024. 5. 10.	2024. 4. 10.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4. 2. 10. ~ 2024. 5. 10.	2024. 4. 10.	

2. 구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언론인단체)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이 력	추천단체
위원장	심창섭	(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혁진	(현) 호서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특임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김준형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더불어민주당
	정군기	(현)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국민의힘
	이훈	(현)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부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동현	(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문현숙	(전)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한국기자협회
	하상응	(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문한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 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앞줄) 왼쪽부터 박혁진 부위원장, 심창섭 심의위원장,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문현숙 심의위원,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뒷줄) 왼쪽부터 정군기, 하상응, 김준형, 이문한, 이훈 심의위원, 조남태 심의실장, 안백수 선거기사심의팀장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 의한 후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또는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 되어 있다.

■ 제재조치 관련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정정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반론보도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제 2 장

심의·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 담당부서인 선거기사심의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자체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한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동안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해당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지체 없이 심의를 개시한다.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에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를 결정한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자체심의를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언론사가 보도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보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 심의절차

